

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 명 만 교육 통신

2024-제227호 2024년 11월 22일

전화 : 850-4800

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관련 예비학부모 안내자료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본교 예비소집일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있는 학부모님은 참고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영만초등학교 예비소집일: 2024.12.26.(목) 14:30 / 장소 : 시청각실

- 유 의 사 항 -

- 1) (취학의무)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, 초·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2) (조기입학·입학연기) 조기입학·입학연기 희망 시, <u>12.31까지</u> 해당 <u>주민센터(행정복</u> 지센터)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- ※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,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
- 3) (취학유예·면제)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·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, <u>입학 예정인 해의 1~2월</u> 중 <u>취학 예정 학교</u>로 취학유예·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※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,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 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·절차 진행 필요
- 4) (예비소집 참석)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,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
- 5) (통학구역 변경 시)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,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(행복복지센터)에서 취학통지 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6) (연락처 변경 시)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,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7) (취학통지서 분실)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.
- 8) (위장전입 금지)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,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